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조선시대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신분과 대우에 대한 연구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문 정 은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조선시대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신분과 대우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신 명 호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문 정 은

문정은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19일



위원장 문학박사 이 근 우 

위 원 문학박사 박 화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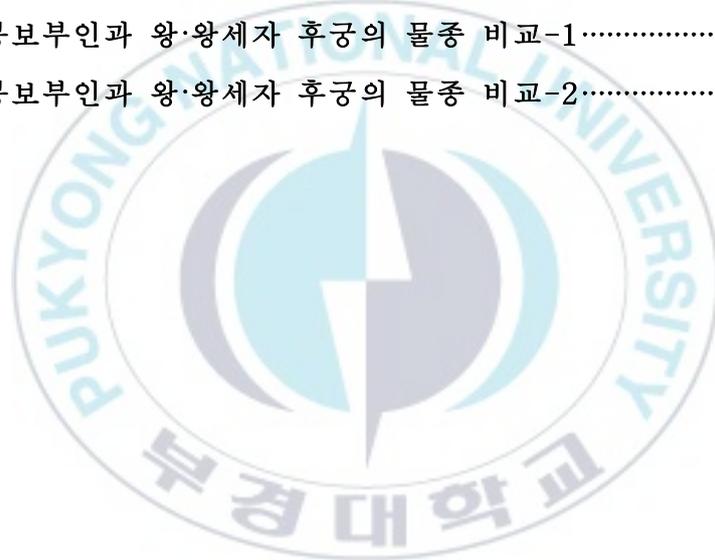
위 원 문학박사 신 명 호 

목 차

I. 머리말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봉보부인의 역할	3
1. 봉보부인의 수유와 치유.....	3
2. 봉보부인의 선발과정.....	8
3. 봉보부인의 출신성분.....	12
III. 봉보부인의 지위	15
1. 봉보부인의 품계.....	16
가. 왕·왕세자 후궁의 품계.....	21
나. 왕실 유모의 품계.....	23
다. 궁인직의 품계.....	26
라. 종친 및 문무관 처의 품계.....	28
IV. 봉보부인의 대우	35
1.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의 대우.....	35
2. 봉보부인과 왕·왕세자 후궁의 대우.....	43
V. 맺음말	50
참고문헌	53

<표 목차>

<표 1> 외명부(外命婦) 정1품~정3품 품계	16
<표 2> 봉보부인과 왕·왕세자 후궁의 품계	21
<표 3> 봉보부인과 궁인직의 품계	26
<표 4> 봉보부인과 종친 및 문무관 처의 품계	28
<표 5>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의 물종 비교	36
<표 6> 봉보부인과 왕·왕세자 후궁의 물종 비교-1	44
<표 7> 봉보부인과 왕·왕세자 후궁의 물종 비교-2	45



A study on the status and Treat of King's Nanny During Joseon Period.

Jung Eun Moon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jor roles and status of king's nanny and thereby, review the social aspects and the positional limits during Joseon period.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preceding studies as well as relevant historic literature: Joseonwangjosillok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Dongui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Gyeonggukdaejeon (The Grand Rule of Laws), Takjijeongrye (Financial Budget), etc.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could be confirmed that king's nanny had got a treatment as good as the first-class (Jong Ilpum) official. However, compared with the similar class such as king's or crown prince's concubine, she was deemed treated differentially, which seems to have been attributable to her lowest social status or 'Cheonmin'.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reconfirmed that Joseon society put priority on status than class. Moreover, through this study, not only the fact that king's power and social status system had been associated with king's nanny could be confirmed but also the national system of Joseon dynasty could be understood.

I.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 왕실(王室)에는 왕자나 왕녀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乳母)가 있었는데, 이 중 왕의 유모를 ‘봉보부인(奉保夫人)’이라 하였다. 봉보부인의 신분은 천민(賤民)이었으나 외명부(外命婦) 중 1품의 품계(品階)와 함께 왕을 보살핀 공을 인정받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¹⁾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아이가 왕이 되는 순간 자신의 신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왕실 가족들에게 유모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왕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왕비나 후궁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젖을 물리지 않아야 빠른 임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산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비의 경우 내명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소임(所任)이었는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산후조리가 필요했을 것이다.²⁾ 이런 이유들로 인해 거의 모든 육아는 유모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모는 친모 이상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³⁾

봉보부인은 왕의 최측근으로 조선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 1품의 품계였다.

-
- 1) 한희숙, 2007, 「조선 전기 奉保夫人의 역할과 지위」, 『조선시대사학보』 43, 조선시대사학회, 57쪽.
 - 2) 한희숙, 앞의 논문, 58쪽.
 - 3) 신현정, 2006, 「모유수유체험의 의미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9권 2호, 한국교육인류학회, 96~9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보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봉보부인에 대한 관심의 부재와 자료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봉보부인의 주요 역할과 지위 및 대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봉보부인뿐만 아니라 내명부, 외명부 여성들의 지위나 대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조선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

본고 II장에서는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왕실 유모의 주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좋은 유모를 선발하는 기준과 왕실 유모의 출신성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해 봉보부인의 품계를 살펴보고, 내명부 왕의 후궁(後宮), 왕세자의 후궁(世子宮), 궁인(宮人)과 외명부 부부인(府夫人), 공주와 옹주(公主,翁主), 군주와 현주(郡主, 縣主), 왕실 유모(乳母), 종친 처(宗親妻), 문무관 처(文武官妻)의 품계를 봉보부인과 비교하여 봉보부인의 지위가 어땠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봉보부인등록(奉保夫人謄錄)』과 『탁지정례(度支定例)』를 통해 기일(期日)마다 관청에서 봉보부인과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 왕실 유모에게 지급했던 물종(物種)과 그 수량을 확인해보고, 봉보부인이 받은 물종과 수량을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 왕실 유모가 받은 물종 및 수량과 비교하여 봉보부인의 대우가 어땠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Ⅱ.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역할

조선시대 왕의 유모를 ‘봉보부인(奉保夫人)’이라 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봉보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같은 왕실 유모였다가 자신이 키운 아이가 왕이 되면 봉보부인이 되었다.⁴⁾

유모의 주요 역할은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우는 일이었는데, 조선시대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만큼 유모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모의 역할에 따라 선발조건과 출신성분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유모의 성품과 기질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모를 선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⁵⁾

이번 장에서는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왕실 유모의 주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좋은 유모를 선발하는 기준과 왕실 유모의 출신성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봉보부인의 수유(授乳)와 치유(治癒)

흔히 유모의 역할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유(授乳)이다. 수유 외에도 많은 역할들이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수유와 치유(治癒)의

4) 대부분 원자(元子)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실 유모가 봉보부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종과 같이 사가(私家)에서 자랐던 경우 사가의 유모가 봉보부인이 되었다.

5) “乳保之人, 亦所慎擇, 外間亦有嬰兒性氣多類乳母之說矣。”(『고종실록』 권11, 11년 2월 10일[癸未]).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대대례(大戴禮)』 6)에 따르면 ‘보(保)’는 신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인데⁷⁾,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아이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⁸⁾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유(授乳)와 치유(治癒)였다.

먼저 왕실 유모가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수유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의하면 수유를 할 때는 고인 젖을 짜낸 후에 젖을 물리는데,⁹⁾ 이는 고인 젖에 좋지 않은 기운이 묻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식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먹는 양을 항상 부족하게 먹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⁰⁾ 또한, 아이가 울면 울음을 그친 후에 젖을 먹여야 하고, 유모가 잠을 잘 때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말라 하였다.¹¹⁾ 유모가 잠든 상태에서 젖을 주면 아이가 지나치게 젖을 많이 먹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¹²⁾

이처럼 수유의 방법이 엄격했던 것은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왕실에서도 동의보감의 수유 방법을 참조하여 수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¹³⁾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대대례(大戴禮)는 한(漢)나라의 대덕(戴德)이 편찬한 저서로,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의, 제도, 문물 등의 모든 예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해 집대성한 책이다. (박양숙 편, 1996, 『대대례(大戴禮)』, 자유문고, 3~7쪽).

7) 박양숙 편, 앞의 책, 76쪽.

8) 봉보부인(奉保夫人)의 ‘보(保)’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같다. 이것으로 보아 봉보부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9) 신명호, 2002, 「조선시대 宮中の 出產風俗과 宮中醫學」, 『古文書研究』 21, 한국고문서학회, 165쪽.

10) 정승혜, 2006, 「조선 왕실의 출산 문화」, 『문헌과 해석』 37, 태학사, 77쪽.

11) 신명호, 앞의 논문, 165쪽.

12) 정승혜, 앞의 논문, 78쪽.

13) 신명호, 앞의 논문, 165쪽.

돌아보건대, 지금의 급선무는 보양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젖을 알맞게 먹이고 잠잘 때 차고 더운 것을 잘 조절한다면 혈기는 저절로 충실해질 것입니다. 만약 지나치게 많이 젖을 먹인다거나 자는 곳을 너무 덥게 한다면 고르고 순조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¹⁴⁾

앞의 사료는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종정경(宗正卿), 규장각(奎章閣) 관리, 유신(儒臣), 내의원(內醫院)의 삼 제조(三提調)가 고종을 인견한 자리에서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언급한 내용이 다. 또한, 우의정(右議政) 박규수(朴珪壽)의 언급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양하는 절차는 전적으로 적당히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의원은 지나치게 덥게 하거나 많이 먹이는 것을 경계하라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심정은 항상 덥고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린아이를 보양하는 도리에는 맞지 않습니다.¹⁵⁾

이를 통해 왕실에서도 『동의보감』의 수유방법을 참조하여 수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모가 아이의 치유(治癒)를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이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방에서 다시 아뢰기를 정유, 이현기, 홍유구 그리고 어의 등과 계속 상의를 하였는데, 원자(元子)의 얼굴색과 눈빛이 어떤가를 조사해봤더니 조금도 상해를 입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염려스럽습니다. 유식온열(乳食蘊熱)로 인해 건강이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유모가 복용하는 가감온담탕(加減溫膽湯)에 시호(柴胡)와 담성(膽星)을 각 1전씩 더하고 조구등(釣鉤藤) 5푼을 더해 그 약을

14) “顧今先務，在於輔養之得宜。 飲乳之時，均其饑飽；就睡之際，調其寒暖，則氣血自然充實。 若或乳度過飽、寢處過煖，則非所以順適也。” (『고종실록』 권11, 11년 2월 10일[癸未]).

15) “顧今先務，在於輔養之得宜。 飲乳之時，均其饑飽；就睡之際，調其寒暖，則氣血自然充實。 若或乳度過飽、寢處過煖，則非所以順適也。” (『고종실록』 권11, 11년 2월 10일[癸未]).

복용하여 본증을 예방하는 것이 의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알았다고 하였다.¹⁶⁾

앞의 사료를 보면 당장 원자가 아픈 것은 아니지만, 젖을 먹을 때 나는 열로 인해 원자의 건강이 망가질까 걱정되니, 여러 약재(藥材)를 더하여 유모에게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고, 왕이 윤허한다. 이는 유모가 아파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의 열을 내리기 위해 유모에게 약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아프면 유모에게 약을 먹이고, 수유를 통해 약효를 아이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숙종 16년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방에서 다시 아뢰기를 …(중략)…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다른 증세는 없으나 기열(肌熱)이 생겨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간간히 끽끔 앓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유모가 복용한 시호쌍해산(柴胡雙解散)에 건갈(乾葛) 1전을 더해 기열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응당합니다. …(중략)… 우황(牛黃) 1푼을 조제하는데 그것이 설사의 염려가 있는 것 같아 절반을 줄여 0.5푼만 제조해서 드리겠습니다.¹⁷⁾

앞의 사료를 보면 원자에게 기열이 생겨 사라지지 않자 유모에게 약을 처방하여 원자의 기열을 내리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자의 설

16) 藥房再啓曰，臣等，退與鄭維岳·李玄紀·洪有龜及諸御醫等，反覆詳議，則皆以爲，仰察元子神色眼彩，則少無受傷之處，或慮乳食蘊熱以致氣候之欠安，乳母所服加減溫膽湯，加柴胡·膽星各一錢，鈞鈞藤五分，連用三十貼，以爲豫防本證之地，宜當云。此藥十貼，爲先劑入之意，敢啓。傳曰，知道。(『승정원일기』 숙종 15년 11월 10일[癸卯]).

17) 藥房再啓曰，臣等卽伏見啓辭之批，以元子所患，已言于醫官爲教，卽與諸醫商議，則皆以爲自昨暮，至于今朝，別無他症，而惟有夜間肌熱，猶未盡祛，時時微有呻吟之音。乳母所服柴胡雙解散加入中，更加乾葛一錢，以爲清熱解肌之地，宜當云。前劑入柴胡鱉甲茶未進一貼，則當爲仍進，而調用牛黃一分，恐有大便利滑之慮，減半調入，亦當云。柴胡雙解散，未服三貼所加乾葛，各一錢，劑入之意，敢啓。(『승정원일기』 숙종 16년 5월 6일[丙申]).

사가 염려되어 약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였다. 이는 약을 복용하는 유모의 몸 상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유모의 젖을 통해 약 기운을 전달받는 원자의 몸 상태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모의 몸을 통해 원자의 몸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모를 통해 아픈 원자를 치유하는 것은 유모가 ‘보(保)’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이의 원기(元氣)가 부족할 때 유모를 통해 아이의 원기를 보양(保養)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숙종 16년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방에서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여러 의관들과 더불어 들어가 진찰할 때 원자가 말하는 것과 안색을 보았더니 열도 내리고 신기(神氣)도 멀쩡했으며 며칠 신음을 내며 앓던 것이 괜찮아졌지만 아직 원기(元氣)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때 청보지제(淸補之劑)를 써야하는데 시호육군자탕(柴胡六君子湯)에 본방(本方) 중에서 지각(枳角)을 빼고 본방(本方)에 없는 백작약주초(白芍藥酒炒) 1전을 넣고 황련(黃連)과 오수유전수초(吳茱萸煎水炒), 청피(靑皮) 각 5푼을 넣어 유모로 하여금 5~6첩정도 연이어 복용하게 하여 간을 억제하고 비장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그리하여 이 약 5첩을 친히 올리고, 갑기탕(甲己湯) 1첩을 이어 올릴 뜻으로 아뢰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였다.¹⁸⁾

앞의 사료를 보면 원자의 열이 내리고 정신도 멀쩡해졌지만 아직 원기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 원기를 보충하는 청보지제(淸補之劑)를 유모에게 써야하는데, 시호육군자탕(柴胡六君子湯)의 본래 처방에서 지각(枳角)을 빼고 백작약주초(白芍藥酒炒) 등을 넣어 유모에게 5~6첩 연이어 복용하게 하여 원자의 간을 억제하고 비장을 보충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유모를 통해 아이의 원기를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사료¹⁹⁾에서 원자의 기열을 내리기 위해 유모에게 처방한 것이

18) 藥房再啓曰, 臣等卽與諸醫入診之時, 瞻望元子言色, 則熱候已退, 神氣頓蘇, 而累日呻吟之餘, 眞元未復. 此時淸補之劑, 不可不用, 柴胡六君子湯本方, 去枳角, 加白芍藥酒炒一錢, 黃連·吳茱萸煎水炒, 靑皮各五分, 使乳母連服五六貼, 以爲抑肝扶脾之地, 宜當云. 此藥五貼, 親進, 甲己湯, 仍進一貼之意, 敢啓. 答曰, 知道.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5월 9일[己亥]).

19) 숙종 16년 5월 6일 『승정원일기』에서 원자의 기열을 내리기 위해 유모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사례들을 통해 아이가 아플 때나 원기보충이 필요할 때 유모에게 약을 복용하게하고, 아이에게 수유를 하여 약효를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이가 어려 직접적으로 약을 먹이는 것이 어렵고, 직접 복용 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모를 통해 약효를 전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의 상태를 유모의 몸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다. 또한 약을 처방할 때 본래의 처방과 다르게 약재를 조절하는 것은 유모의 상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몸 상태에 맞춰 약을 처방한 것이었다.

이러한 유모의 역할에 맞춰 유모를 선발하는 조건과 출신성분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절에서는 왕실 유모의 선발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봉보부인의 선발과정

궁중에서는 유모를 선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유모가 아이의 정서와 성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⁰⁾ 유모는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정서와 성품에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매우 중요한 존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자가례(朱子家禮)』²¹⁾에 따르면 “자식을 낳아 만약 유모를 구한다면

처방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숙종 16년 5월 9일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 신명호, 앞의 논문, 166쪽.

21) 중국 남송 때의 사람인 주희(朱熹)가 편찬한 책이다. 예의 기본 논리인 사회질서와 기강을 위한 관혼상제의 의장을 제정하며 그 내면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사대부 관료들에게 필수로 권장되었고, 국가 전례에도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임민혁

반드시 양가(良家)의 부인으로 조금 온화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택해야한다. 유모가 불량하면 가문의 법도(法度)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기르는 자식의 성품과 행동 또한 그와 같게 된다.” 고 하였는데,²²⁾ 유모의 행동과 성품뿐만 아니라 양가(良家)의 부인인지도 고려해야한다 하였다. 이는 훌륭한 집안의 부인을 유모로 삼으라는 것인데, 여기서 훌륭한 집안은 병이 없고 범죄자가 없어야하며 성품과 행동이 착한 도덕적인 집안에서 유모를 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만큼 유모가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대대례』의 보부편(保傅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왕이 태어나니 인자(仁慈)한 사람이 기르고 효순(孝順)한 사람이 업고 네 현인(賢人)이 그의 곁에 있었다. 성왕이 사리를 알게 되니 태공(太公)을 가려 태사(太師)로 삼고 주공(周公)을 태부(太傅)로 삼았다.”²³⁾ 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왕 옆에 훌륭한 사람만 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중에서도 “인자한 사람이 기르고 효순한 사람이 업고” 라는 구절에서 유모도 훌륭한 사람을 뒤야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세자의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²⁴⁾, 유모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참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모를 선발하는 과정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 1999, 『주자가례(朱子家禮)』, 예문서원, 11~24쪽).

22) 임민혁 편, 앞의 책, 110쪽.

23) 박양숙 편, 앞의 책, 92쪽.

24) 《保傅篇》曰: ‘成王爲太子, 幼在襁褓, 召公爲太保, 周公爲太傅, 太公爲太師, 明孝仁禮義, 以導習之, 成王自爲赤子, 而教已行矣.’ 太子之禮如此, 比之古事, 雖已遲矣, 須及孩提有識, 委任師傅, 以教導保養。(『헌종실록』 권7, 4년 8월 5일[庚子]).

유모를 고를 때는 반드시 정신이 맑아야하며 영리하고 성질이 온순하며 명랑하고 살찌지 않아야하며 아무 병이 없어야하고 차거나 더운 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하며 젖을 알맞게 먹일 줄 알아야하고 젖이 진하고 희면 좋다.²⁵⁾

이와 같이 유모를 선발할 때 심성적 요건과 신체적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유모를 선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아이의 성품과 행동이 유모를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모에게 병이 있으면 아이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요건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왕실 유모 역시 『동의보감』을 참조하여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규수가 아뢰기를, "유모도 신중히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대궐 밖에서도 어린 아이의 성질과 기상은 대체로 유모를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의 말이 옳다. 나도 이런 말을 들었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유모는 반드시 성품이 온순하고 기혈이 충실한 사람을 고른 뒤에야 기질을 변화시키고 몸을 보양하는 방도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자전도 일찍이 유모를 가려서 들이라고 명하셨다." 하였다.²⁷⁾

앞의 사료는 박규수(朴珪壽)와 홍순목(洪淳穆)이 원자의 유모를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왕실 유모를 선발할 때 『동의보감』을 참조하여 선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이처럼 심성적 요건과 신체적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선발된 유모는 좋은 유모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25) 『동의보감』 잡병편 권11, 소아(小兒).

26) 신명호, 2005, 『조선 왕실의 자녀교육법』, 시공사, 162~163쪽.

27) 珪壽曰: "乳保之人, 亦所慎擇, 外間亦有嬰兒性氣多類乳母之說矣." 教曰: "大臣之言然矣. 予亦聞有此言矣." 淳穆曰: "乳母必擇性稟溫順、氣血充實之人, 然後允愜於移氣、養體之方矣." 教曰: "慈聖嘗命擇乳母以入矣." (『고종실록』 권 11, 고종 11년 2월 10일[癸未]).

28) 신명호, 앞의 논문, 166쪽.

유모는 매우 시고 짠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몸이 많이 차거나 더우면 그 즉시 젓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차거나 더울 때 젓을 먹이면 반드시 젓으로 인해 벽증(癖證)이 되거나 경감(驚瘡)이나 설사, 이질(痢疾) 등이 생길 수 있다.

성(性)생활을 할 때 아이에게 젓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이를 ‘교내’라고 하는데 반드시 벽증(癖證)이 생긴다.

유모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아야 한다. 유모가 술을 마신 뒤 젓을 먹이게 되면, 아이는 기침이나 경열(驚熱),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모는 반드시 음식을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먹으면 젓이 나오고, 성욕이 동하면 젓에 영향이 미쳐 병 기운이 젓에 가면 반드시 젓이 영기게 된다. 갓난아이에게 이런 젓을 먹이면 곧 병이 생겨 토하지 않으면 설사를 하고, 헌데가 나지 않으면 열이 나며 입 안이 헤어지거나 경풍으로 손발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밤에 울거나 배앓이를 한다. 병이 처음 생길 때 소변의 양이 아주 적어지니 반드시 자세히 묻고 증상에 따라 조절하여 치료하면 어머니와 어린이 모두 편안하며 병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²⁹⁾

이와 같이 좋은 유모가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절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등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었다. 음식을 조절하고 술을 절제하며 상황에 맞춰 젓을 먹이려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따뜻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빼돌어져 아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유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다.³⁰⁾ 이런 이유로 인해 유모의 심성적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아프거나 원기가 약할 때 유모의 몸을 통해 치유해야 했기 때문에 유모의 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 신체적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유모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유모를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확인했던 좋은 유모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유모의 역할에

29) 『동의보감』 잡병권 권11, 소아(小兒).

30) 신명호, 앞의 책, 163쪽.

맞춰 유모를 선발하는 조건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왕실 유모의 출신성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 봉보부인의 출신성분

유모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선발과정을 거쳐 유모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선발한 유모의 신분은 대부분 천민(賤民)이었다. 유모를 선발한다면 양반(兩班) 중에서 선발하고 싶었을 텐데 왜 천민을 유모로 선발하였을까?

천민으로 선발한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왕실과 마찬가지로 양반가에서도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실 유모가 되어 궁에 들어가면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왕실 유모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왕실 유모가 되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떼어놓고 궁에 들어와야 하는데, 양반가에서 굳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떼어놓고 궁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왕실 유모로 들어와 봉보부인이 된다면 막강한 권력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한 왕실에서 양반 출신의 유모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앞에서 살펴본 유모의 역할 중 치유의 역할은 유모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이었다. 유모의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아이가 아프면 유모에게 약을 처방하였기 때문에, 심하면 목숨이 위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왕실 유모를 천민으로 선발했던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아, 아이가 아플 때 유모의 몸을 통해 치유하려면 천민의 유모를 선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모의 몸이 아닌 아이의 몸에 맞춰 처방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자칫 유모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천민 중에서 유모를 선발했던 것으로 보이며, 유모의 역할에 맞춰 유모의 출신성분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작호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모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다. 보통 가장 중요한 유모의 역할을 ‘수유(授乳)’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수유하는 방법은 매우 엄격하였다. 이는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수유가 단순히 ‘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앞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가 아프면 약을 아이에게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모를 통해 쓰는데, 이는 원자의 상태를 유모의 몸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다.

왕실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직접 수유(母乳)하지 않고 유모를 통해 수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유(治癒)의 목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왕비의 몸에 약을 사용한다면 자칫 왕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왕비의 몸을 통해 약을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생모가 아닌 유모를 통해 수유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이 유모를 천민으로 선발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保)’의 의미가 신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인데, 유모의 역할이 수유에서 그쳤다면 ‘보’와 연결시켜 생각하기 애매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모의 몸을

통해 아이를 치료하고 아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왕의 유모를 ‘봉보부인’이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봉보부인’이라는 작호에 봉보부인의 역할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조선시대에 무탈(無顛)하게 자라 왕이 되는 것은 유모의 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모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키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봉보부인’이라는 작호와 함께 높은 품계와 좋은 대우를 해줬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봉보부인의 품계에 대해 알아보고 내명부와 외명부 여성들과의 품계를 비교하여 봉보부인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지위

조선시대의 품계는 18품 30계로 품계를 정(正)과 종(從)으로 나뉘고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며, 다시 종6품 이상의 정과 종은 상(上)과 하(下)의 2계(階)로 나뉘고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으로 하고, 정3품 하계(下階)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종6품까지 당하관과 참상(參上)이라 하며,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라고 하여 구분했다.³¹⁾ 또한, 내명부(內命婦) 왕·왕세자의 후궁과 외명부(外命婦) 종친 및 문무관 처 등의 여성에게도 남편의 품계에 대응하는 품계와 작위(爵位)를 주었다.

이번 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과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해 봉보부인의 품계에 대해 알아보고 내명부와 외명부 여성들과의 품계를 비교하여 봉보부인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1) 『경국대전』 권1, 吏典 京官職 東班官階.

1. 봉보부인의 품계(品階)

<표 1. 외명부(外命婦) 정1품~정3품 품계>

	대전유모 (大殿乳母)	왕비모 (王妃母)	왕녀 (王女)	왕세자녀 (王世子女)
무품 (無品)			공주, 옹주 (公主嫡, 翁主庶)	
정1품 (正一品)		부부인 (府夫人)		
종1품 (從一品)	봉보부인 (奉保夫人)			
정2품 (正二品)				군주 (郡主嫡)
종2품 (從二品)				
정3품 (正三品)				현주 (縣主庶)

*참조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왕의 유모인 봉보부인의 품계(品階)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외명부(外命婦) 봉작종부직(封爵從夫職)을 통해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봉보부인의 품계는 종1품으로 왕실 유모 중 가장 높은 품계였다.³²⁾ 외명부의 품계를 비교해보면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는 왕의 자녀인 공주(公主)와 옹주(翁主) 그리고 왕비의 어머니인 정1품 부부인(府夫人) 뿐이었다. 심지어 왕세자의 자녀인 정2품 군주(郡主)와 정3품 현주(縣主)보

32) 外命婦 大殿乳母 從一品 奉保夫人。(『경국대전』 권1, 吏典 外命婦 封爵從夫職).

다 높은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조 9년(1785)에 만들어진 『대전통편(大典通編)』³³⁾과 고종 2년(1865)에 편찬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³⁴⁾, 고종 4년(1867)에 대전회통을 보완하여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³⁵⁾의 기록에서도 봉보부인은 종1품의 품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봉보부인이 종1품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봉보부인의 봉작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세종 17년(1435)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모 이씨(李氏)를 봉하여 봉보부인(奉保夫人)을 삼았는데, 임금이 아보(阿保)의 공을 중하게 여겨 옛 제도를 상고하여 법을 세우게 하였더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예전 제도를 상고하오니 제왕이 유모를 봉작(封爵)하는 것이 한(漢)나라에서 시작하여 진(晉)나라를 거쳐 당(唐)나라까지 모두 그러하였고, 내려와 송(宋)나라 조정에 미치어 진종(眞宗)의 유모 유씨(劉氏)를 진국 연수보성부인(秦國延壽保聖夫人)을 봉하였으니, 마땅히 예전 제도에 의하여 이제부터 유모의 봉작을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이라 칭하고, 품질(品秩)은 종2품에 비등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라서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³⁶⁾

앞의 사료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왕의 유모의 봉작을 ‘봉보부인’이라 한 것은 세종 17년으로, 『경국대전』과 『대전통편』,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의 기록과 달리 처음에는 품계가 종2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성종 7년(1476)에 완성된 『경국대전』에서 봉보부인의 품계가 종1품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무려 2품이나 상승한 것이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봉보부인은 왕비의 어머니인 부부인과 왕녀인

33) 奉保夫人大殿乳母。從一品。(『대전통편』 권1, 吏典 外命婦 王女).

34) 奉保夫人大殿乳母。從一品。(『대전회통』 권1, 吏典 外命婦 外命婦 王女).

35) 奉保夫人大殿乳母, 從一品。(『육전조례』 권1, 吏典 吏曹 考勳司 命婦爵帖).

36) 封乳母李氏爲奉保夫人。上重阿保之功, 令考古制立法, 禮曹啓: "謹按古制, 帝王乳母封爵, 始於漢, 歷晉迄唐皆然, 降及宋朝, 眞宗乳母劉氏, 封秦國延壽保聖夫人。宜依古制, 自今乳母封爵, 用美名稱奉保夫人, 秩比從二品。" 從之, 遂有是命。(『세종실록』 권68, 17년 6월 15일[乙卯]).

공주, 옹주보다는 낮은 품계이지만, 왕세자의 딸인 군주, 현주보다는 높은 품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봉보부인이 종1품의 품계였던 것은 왕의 유모였기 때문인데, 왕의 유모를 왕세자의 딸인 군주와 현주보다 낮은 품계에 두는 것이 ‘효’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세종실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이 유모의 공을 중요하게 여겨 옛 제도를 상고하여 법을 세우게 하였더니 예조에서 한나라와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유모에게 ‘연수보성부인’이라 칭하고 종2품의 품계를 내렸다는 근거를 들며, 조선 왕의 유모에게 ‘봉보부인’이라는 칭호와 종2품의 품계를 하사할 것을 왕에게 말하니 세종이 이를 따라 ‘봉보부인’이라는 봉작과 함께 종2품의 품계를 하사하였다.

이 사료를 통해 세종이 유모의 공을 내세워 대우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자신을 키워준 유모에 대한 ‘효’가 드러난다. 왕에게 봉보부인은 자신을 양육해준 또 다른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기 때문에 왕은 봉보부인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신분 체제상 면천(免賤)³⁷시켜주는 것은 많은 반대가 따르는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질서를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의 대우를 해주고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써 적장자가 아니었고, 세자가 된지 두 달 만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 본래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갑작스럽게 세자가 되었고,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기간도 단 두 달밖에

37) 봉보부인의 친족(親族)을 면천(免賤)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연산군일기』 2년 3월 3일의 기록을 보아 면천시켜주는 것은 특별한 경우였으며, 신하들의 반대로 인해 면천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하들이 동의한 몇몇의 사례를 제외하고 면천시켜주는 것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본고에서는 봉보부인과 그의 친족을 면천시켜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되지 않았으며,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깨고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누구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본래 왕이라는 존재는 양반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이다. 그런 초월적인 존재인 왕을 양육했다는 이유만으로 천민인 봉보부인에게 종2품이라는 높은 품계를 내림으로서, 왕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세종이 왕의 유모에게 종2품이라는 높은 품계와 ‘봉보부인’이라는 봉작을 내린 것은 왕 본인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 때 종2품이었던 봉보부인의 품계는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통해 종1품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봉보부인의 품계가 종1품으로 상승한 것은 ‘효’라는 논리를 통해 자신을 키워준 봉보부인의 공을 내세워 높은 품계와 함께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이를 통해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표연말(表沿沫) 등이 차자(筵子)를 올려 아뢰기를, …(중략)… “전하께서 유온(乳媪)을 대우하심이 너무 후하시어 은사(恩賜)가 절도가 없으시니, 그가 반드시 괴임을 믿고 교만 방자할 것이며, 세력을 넘보는 무리들은 다투어 서로 따라 붙어서 기염(氣焰)이 대단하고 벼슬을 팔고 옥사(獄事)에 간여하여 못할 것이 없이 하여, 나라 일이 장차 날로 글러져 갈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렵지 않으리까. …(중략)…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깊이 살피고 경계하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이 비록 형체를 하늘에서 받았을지라도 만약 보양(保養)의 공이 없다면 장성하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유모(乳母)의 공이 아니었다면 오늘에 이를 수 없었다. 옛날의 제왕이 유온(乳媪)에게 후히 하다가 마침내 위망에 이른 자도 실로 있기는 하나 우리 예종·성종께서도 역시 일찍이 종량(從良)을 허하셨으나 끝내 교만 방종한 후환은 없었다. 하물며 저들이 비록 교만 방종하고자 하더라도 대우하는 도리는 나에게 달렸음에랴. 무릇 듣지 못할 일은 비록 대간이 말한다 할지라도 의당 듣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유온(乳媪)에 관한 말임에랴.” 하매, 연말(沿沫) 등이 서계(書啓)하기를, “옛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일컬어 ‘하늘과 같이 그지 없다.[昊天罔極]’하고, 유온(乳媪)의 노고를 일컫기는 ‘조한 데는 밀어 주고 습한 데에 거처한다.[推燥居濕]’하는데에 불과하였으니, 그 경하고 중한 것이 크게 차이가 있는데, 유온

(乳媪)의 작은 노고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종묘 사직에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 하께서 부모가 생육(生育)하는 우로(雨露)와 같은 은혜에 대한 것으로 유온을 대우하시니, 이것이 바로 사은(私恩)을 베푸심이 매우 과하다는 것입니다. …(중략)… 전하의 과실이 이보다 큰 것이 없사오니, 경성(警省)을 더하시어 속히 고쳐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또 예종조의 일을 가지고 하교하셨으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예종께서 불행히도 재위(在位)하신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만약 여러 해를 재위하셨다면 끝내 그 폐단이 없었을지 또한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반드시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하는 것이라 이를 것이다. 명색이 임금이란 것이 이와 같으니, 어진 선비가 어찌 반드시 직에 있겠느냐. 각기 짐작해서 하라. 임금이 권도(權道)를 쓰지 못하면, 신하들이 장차 마음대로 하여 권한이 위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비록 반복하여 말할지라도 결코 들을 수 없다.”하였다.³⁸⁾

『연산군일기』를 보면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표연말(表沿沫) 등이 봉보부인의 대우가 너무 후하여 부정부패가 걱정되니 이를 경계하여 봉보부인에게 남용한 사은(私恩)을 거두라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유모가 보양(保養)한 공이 크다 하며 대우와 도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연말 등은 봉보부인의 공은 부모의 공과 비교할 수

38) 弘文館直提學表沿沫等上劄曰:伏聞, 殿下賜奉保夫人奴婢七口, 保母奴婢六口。又命奉保夫人族親限六寸, 賤人之爲良者六, 私賤之爲公賤者二十四, 公賤之納布貢者十, 臣等不勝駭愕。是何殿下之施私恩, 如此其濫也? 乳母養聖躬, 雖有推燥居濕之勤, 位一品, 享厚祿, 亦足以報微勞。特賜臧獲, 使之自擇, 其賜已濫, 況自擇乎? 殿下待乳媪大厚, 恩賜無節, 彼必恃寵驕恣, 外交屬托。觀勢之徒爭相趨附, 氣焰熏灼, 賣官鬻獄, 無所不至, 國事將日非矣, 豈不深可懼哉? 如漢安帝之於王聖, 順帝之於宋娥, 北齊後主之於陸令萱, 始以阿保之功, 漸干國政, 終至危亡而後已, 觀其史籍, 誠可寒心。伏望殿下, 深察警省, 亟收成命。傳曰: “人雖受形於天, 若無保養之功, 不能長成。予非乳母之功, 則無以至今日。古之帝王, 厚於乳媪, 而終至危亡者, 固有之矣。我睿宗、成宗亦嘗許良, 而終無驕縱之患。況彼雖欲驕縱, 其待之之道在我爾。凡不可聽之事, 雖臺諫言之, 固當不聽, 況乳媪之言乎?” 沿沫等書啓曰: 古人稱父母之恩曰: “昊天罔極。” 稱乳媪之勞, 則不過曰: “推燥居濕。” 其輕重大相懸絕。乳媪微勞, 豈有一毫關於宗社也? 殿下以父母生育雨露之恩待乳媪, 此所以施私恩若是其大濫也? 若殿下執此心不改, 則臣等竊恐王聖、陸令萱復生於今日也。殿下以乳媪之功, 爲關於宗社, 臣等不然。今日寵待乳媪之禍, 實大關於宗社, 殿下過舉無大於此, 請加警省速改幸甚。且以睿宗朝之事教之, 臣等以謂, 睿宗不幸享國不永, 若享國累年, 則又安知終無其弊乎? 傳曰: “爾等必謂予聽人言, 而爲之也。有君如此, 賢士何必在職乎? 其各斟酌之。人君不得用權道, 則人臣將自爲之, 而權不在上矣。爾等雖反覆言之, 決不可聽也。”(『연산군일기』 권13, 2년 3월 13일[辛卯]).

없을 만큼 작은 노고라 말하며 봉보부인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 과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연산군은 임금의 권도(權道)를 쓰지 못하면, 장차 신하들이 마음대로 하여 권한이 위에 있지 않게 될 것임을 말하며 신하들이 반복하여 말할지라도 결코 들을 수 없다고 말한다. 연산군은 자신을 키워준 유모에 대한 공을 강조하며 대우와 도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는데, 여기에서 ‘효’가 드러난다. 하지만 봉보부인의 대우가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는 신하들에게 아무리 반복하여 말할지라도 결코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겉으로는 봉보부인을 ‘효’의 논리로 대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속으로는 봉보부인을 통해 ‘왕권’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봉보부인은 왕의 수많은 노비 중 하나인데, 그 노비 중 최고는 봉보부인이었던 것이다. 즉, 주인(왕)이 조선에서 가장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봉보부인에게도 높은 품계를 주었던 것이고, 봉보부인을 통해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통해 왕의 권력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가. 왕·왕세자 후궁의 품계

<표 2. 봉보부인과 왕·왕세자 후궁의 품계>

	대전유모 (大殿乳母)	왕의 후궁(後宮)	왕세자의 후궁 (世子宮)
정1품(正一品)		빈(嬪)	
종1품(從一品)	봉보부인 (奉保夫人)	귀인(貴人)	
정2품(正二品)		소의(昭儀)	

종2품(從二品)		숙의(淑儀)	양제(良娣)
정3품(正三品)		소용(昭容)	
종3품(從三品)		숙용(淑容)	양원(良媛)
정4품(正四品)		소원(昭媛)	
종4품(從四品)		숙원(淑媛)	승휘(承徽)
정5품(正五品)			
종5품(從五品)			소훈(昭訓)

*참조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시대 내명부에 소속된 여성들 중 왕과 왕세자의 후궁들과 봉보부인의 품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내명부(內命婦) 내명부세자궁(內命婦世子宮)³⁹⁾에 따르면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는 왕의 후궁인 정1품 빈(嬪)이 유일하다. 종1품 귀인(貴人)과 봉보부인은 같은 품계이며 정2품 소의(昭儀), 종2품 숙의(淑儀), 정3품 소용(昭容), 종3품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 종4품 숙원(昭媛)은 봉보부인보다 아래 품계에 해당된다. 세자의 후궁은 종2품 양제(良娣), 종3품 양원(良媛), 종4품 승휘(承徽), 종5품 소훈(昭訓)으로 품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세자의 후궁들은 모두 봉보부인보다 낮은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전통편』⁴⁰⁾과

39) 內命婦 正一品 嬪。 , 從一品 貴人。 , 正二品 昭儀。 , 從二品 淑儀。 , 正三品 昭容。 , 從三品 淑容。 , 正四品 昭媛。 , 從四品 淑媛。 (『경국대전』 권1, 吏典 內命婦 內命婦世子宮); 世子宮 從二品 良娣。 , 從三品 良媛。 , 從四品 承徽。 , 從五品 昭訓。 (『경국대전』 권1, 吏典 內命婦 內命婦世子宮).

40) 嬪正一品。 , 貴人從一品。 , 昭儀正二品。 , 淑儀從二品。 , 昭容正三品。 , 淑容從三品。 , 昭媛正四品。 , 淑媛從四品。 (『대전통편』 권1, 吏典 內命婦 嬪 以下);

『대전회통』 41), 『육전조례』 42)의 기록에서도 위와 같이 왕의 후궁인 정1품 빈(嬪)을 제외하고는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가 없었고, 왕세자의 후궁 역시 봉보부인보다 낮은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봉보부인은 왕의 후궁인 ‘빈’보다는 낮은 품계이나, ‘귀인’과는 같은 품계였으며 그 외 왕의 후궁들과 왕세자의 후궁들 보다는 높은 품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보부인의 신분은 천민이었으나, 왕과 왕세자의 후궁은 대부분 양반이었다.⁴³⁾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고려해봤을 때, 천민인 봉보부인을 종1품 귀인과 같은 품계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과격적인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대우는 봉보부인이 왕의 유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왕실 유모의 품계

모든 왕실 가족들에게는 각각 유모 1명이 배정되었는데, 왕실에서 태어나는 세자나 세손을 비롯한 대군, 공주 등의 유모는 왕실 자녀가 출생할 때 초택(抄擇)되었고, 대비(大妃)나 중전, 세자빈, 세손빈 등의 유모는 왕실의 가족과 혼인할 때 사가에 있던 유모가 왕실 유모가 되었다. 이로 인해

良娣從二品。 , 良媛從三品。 , 承徽從四品。 , 昭訓從五品。 (『대전통편』 권1, 吏典 內命婦 世子宮).

41) 嬪正一品。 補 有敎命, 則無階。 , 貴人從一品。 , 昭儀正二品。 , 淑儀從二品。 , 昭容正三品。 , 淑容從三品。 , 昭媛正四品。 , 淑媛從四品。 (『대전회통』 권1, 吏典 內命婦 嬪 以下); 良娣從二品。 , 良媛從三品。 , 承徽從四品。 , 昭訓從五品。 (『대전회통』 권1, 吏典 內命婦 世子宮).

42) 內命婦 嬪正一品。 有敎命則無階。 , 貴人從一品。 , 昭儀正二品。 , 淑儀從二品。 , 昭容正三品。 , 淑容從三品。 , 昭媛正四品。 , 淑媛從四品。 (『육전조례』 권1, 吏曹 考勳司 命婦爵帖); 世子宮, 良娣從二品。 , 良媛從三品。 , 承徽從四品。 , 昭訓從五品。 (『육전조례』 권1, 吏曹 考勳司 命婦爵帖).

43) 승은후궁을 제외한 왕과 왕세자 후궁의 신분은 대부분 양반이었다.

왕실 자녀의 유모와 사가에서 자란 왕실 자녀 배우자들의 유모는 신분 및 선발 과정에도 차이가 있었다. 왕실 자녀 유모의 신분은 대부분 공사천(公私賤)으로 왕이나 대비의 명으로 초택되었다. 선발과정으로는 승정원에 왕이 전교를 내려 각사(各司)의 비자(婢子) 중에서 초택하거나⁴⁴⁾, 대비가 유모 초택 명을 내려 선발하는 방식이었다.⁴⁵⁾ 이렇게 선발된 유모와 그의 가족들은 내수사로 이속되었다.⁴⁶⁾ 혼인과 동시에 왕실 가족이 된 배우자들의 유모는 사가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어른이 유모를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들은 양육했던 아이가 왕실 가족이 되어 입궐하는 순간부터 왕실 유모로서 호조의 진배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왕실 가족들은 ‘유모’라 부르는 여성의 손에 길러졌고, 여기서 기른 아이가 왕이 되면 그 유모는 ‘봉보부인’에 봉작(封爵)되었다. 봉보부인은 비록 천민 출신이지만 자신이 키운 아이가 왕이 되면서 종1품의 아주 높은 품계에 많은 물종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대비의 유모는 ‘유모’라는 명칭 대신 ‘아지(阿只)’로 불리었다. 본래 ‘아지(阿只)’는 아기씨의 유모를 뜻하는데⁴⁸⁾, 탁지정례에서는 자전(慈殿)의 유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지(阿只)’가 유모들과 같은 기일에 같은 물종을 하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는 것과 단종 때 궁내 유모를 ‘아지(阿之)’라고 했던 것으로 볼 때⁴⁹⁾, ‘아지(阿只)’는 유모를 지

44) “傳于朴鎮圭曰 去正月 自本院 乳母別爲抄擇以待事分付矣 今二十八日 被抄等待 令于差備事 分付”(『승정원일기』 숙종 15년 2월 26일[甲子]); “傳于李周徵曰 新 生王子乳母 各司婢子中 極擇抄入”(『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0월 6일[丙子]); “傳于沈季良曰 頃者各司奴婢中 抄擇乳母以入矣 乳汁甚少 更爲另擇以入”(『승정 원일기』 숙종 19년 10월 18일[戊子]).

45) “趙顯命曰 元子保養之節 內殿皆宜照管”(『영조실록』 권40, 11년 1월[戊申]); “上 曰 慈聖嘗命擇乳母以入矣”(『춘추일기』, 고종 11년 2월 10일[癸未]).

46) 한희숙, 앞의 논문, 63쪽.

47) “삼칠후집으르드러오니증도모니시겨오셔보오시고괴디호오셔이아히다른아히와 다르니갈길으라호오셔유모를친히갈히여보내오시니곳니아지러라”(『한통록』, 권1).

48)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 44쪽.

칭하는 것이며 봉보부인과 같이 봉작을 준 것은 아니지만 호칭에 차이를 두어 대비의 유모를 대우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 가족들은 유모가 한 명씩 있었고, 유모를 선발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혼인으로 인해 왕실 가족이 되는 순간 유모들도 왕실 유모가 되어 호조의 진배 대상이 되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왕이 되면 종1품 ‘봉보부인’에 봉작(封爵)되었고, 자전(慈殿)이 되면 ‘아지(阿只)’로 불렸다.⁵⁰⁾

왕실 유모들 중 가장 높은 품계의 유모는 단연 왕의 유모인 ‘봉보부인’이었다. 봉보부인은 비록 천민이지만 자신이 키운 아이가 조선의 지존인 ‘왕’이 되면서 종1품의 품계를 받았으며, 많은 물종을 지급받아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또한 중궁의 유모는 궁내 5품의 품계를 받았는데⁵¹⁾, 이는 제조상궁의 품계와 같은 급이었다. 자신이 키운 아이의 위치에 따라 본인의 품계도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유모들은 품계에 관한 기록이 없어 확실한 품계를 알 수 없지만,⁵²⁾ 왕실 가족들의 품계와 다음 장에 서술할 진배(進排) 물종의 수량을 통해 각 유모들의 품계를 추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중궁의 유모가 5품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유모들은 5품이거나 그 이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봉보부인과는 최소 7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같은 왕실 유모이지만 키운 아이가 왕이 되면서 품계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가 하는 일은 비슷했지만 키운 아이가 왕이 되면서 대우는 완전히 달

49) “侍女等有留壽康宮者，一侍女，以諺文書阿之安否(俗，稱內乳媪爲阿之。)，送于惠嬪，惠嬪達于內，下諺文于承政院。”(『단종실록』 권6, 1년 4월 2일[己丑]).

50) 박미선, 2011, 「18 19세기 왕실유모의 범위와 위상」 - <度支定例>와 <例式通考>를 중심으로 -, 『사충』 7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47~49쪽.

51) “上又議於政府六曹曰 乳母官爵 議已定矣 獨中宮乳母無古制 肆不擬議 然此豈無功乎 宜加官爵 但宮內之官 宮妾得拜四品之秩 其外雜類 皆除五品以下之官 故乳母之官 不可以此而除拜 依臣僚四品之妻封爲恭人何如 僉曰恭人 士大夫之妻之爵 不可混施 宜除宮內五品之職 從之”(『세종실록』 권68, 17년 6월 15일[乙卯]).

52) 박미선, 앞의 논문, 47~49쪽.

라진 것이다. 이러한 대우의 차이는 왕의 존재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의 대우 차이는 왕조국가에서 왕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왕을 양육한 것만으로 다른 유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났던 것이다.

다. 궁인직의 품계

<표 3. 봉보부인과 궁인직의 품계>

	대전유모 (大殿乳母)	내명부 궁인직 (內命婦 宮人職)	세자궁 궁인직 (世子宮 宮人職)
종1품 (從一品)	봉보부인 (奉保夫人)		
정5품 (正五品)		상궁(尙宮)·상의(尙儀)	
종5품 (從五品)		상복(尙服)·상식(尙食)	
정6품 (正六品)		상침(尙寢)·상공(尙功)	
종6품 (從六品)		상정(尙正)·상기(尙記)	수규(守闈)·수칙(守則)
정7품 (正七品)		전빈(典賓)·전의(典衣)· 전선(典膳)	
종7품 (從七品)		전설(典設)·전제(典製)· 전언(典言)	장찬(掌饌)·장정(掌正)
정8품 (正八品)		전찬(典贊)·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 (從八品)		전등(典燈)·전채(典彩)· 전정(典正)	장서(掌書)·장봉(掌縫)
정9품 (正九品)		주궁(奏宮)·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 (從九品)		주변치(奏變徵)·주치(奏徵) ·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	장장(掌藏)·장식(掌食) ·장의(掌醫)

*참조 :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진조례(六典條例)』.

조선시대 내명부에 소속된 여성들 중 궁인(宮人)들의 품계를 비교해 보
고자 한다. 『대전통편(大典通編)』 이전(吏典) 내명부(內命婦) 내명부 궁
인직(內命婦 宮人職)⁵³⁾과 세자궁 궁인직(世子宮 宮人職)⁵⁴⁾에 따르면 봉보
부인보다 높은 궁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궁인은 정5품 상궁(尙宮)·상의(尙
儀), 종5품 상복(尙服)·상식(尙食), 정6품 상침(尙寢)·상공(尙功), 종6품 상정
(尙正)·상기(尙記), 정7품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 정8품 전찬(典
贊)·전식(典飾)·전약(典藥), 종8품 전등(典燈)·전채(典彩)·전정(典正), 정9품
주궁(奏宮)·주상(奏商)·주각(奏角), 종9품 주변치(奏變徵)·주치(奏徵)·주우(奏
羽)·주변궁(奏變宮)으로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의 품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봉보부인보다 낮은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세자궁 궁인은 종6품 수궐
(守閨)·수칙(守則), 종7품 장찬(掌饌)·장정(掌正), 종8품 장서(掌書)·장봉(掌
縫), 종9품 장장(掌藏)·장식(掌食)·장의(掌醫)로 종6품부터 종9품까지의 품
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 역시 봉보부인보다 한참 낮은 품계였다.

53) 尙宮以下係宮人職。尙儀正五品。尙服·尙食從五品。尙寢·尙功正六品。尙
正·尙記從六品。典賓·典衣·典膳正七品。典設·典製·典言從七品。典贊·典飾·
典藥正八品。典燈·典彩·典正從八品。奏宮·奏商·奏角正九品。奏變徵·奏徵·奏
羽·奏變宮從九品。(『대전통편』 권1, 吏典 內命婦 宮人職).

54) 守閨以下係宮人職·守則從六品。掌饌·掌正從七品。掌書·掌縫從八品。掌藏·
掌食·掌醫從九品。(『대전통편』 권1, 吏典 內命婦 世子宮 宮人職).

『대전회통(大典會通)』 55)과 『육전조례(六典條例)』 56)의 기록에서도 위와 같이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의 품계였고,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의 궁인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궁인직에서 가장 품계가 높은 정5품 상궁과 상의를 봉보부인과 비교하면 7품의 차이가 나고, 세자궁 궁인직에서 품계가 가장 높은 종6품 수규와 수칙과는 9품의 차이를 보인다. 왕의 유모가 되면서 일반 궁인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품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라. 종친 및 문무관 처의 품계

<표 4. 봉보부인과 종친 및 문무관 처의 품계>

	대전유모 (大殿乳母)	종친처(宗親妻)	문무관처 (文武官妻)
정1품 (正一品)		부부인(대군처), 군부인 (府夫人[大君妻]),(郡夫人)	정경부인 (貞敬夫人)
종1품 (從一品)	봉보부인 (奉保夫人)	군부인(郡夫人)	정경부인 (貞敬夫人)

55) 尙宮以下係宮人職。尙儀正五品。尙服·尙食從五品。尙寢·尙功正六品。尙正·尙記從六品。典賓·典衣·典膳正七品。典設·典製·典言從七品。典贊·典飾·典藥正八品。典燈·典彩·典正從八品。奏宮·奏商·奏角正九品。奏變徵·奏徵·奏羽·奏變宮從九品。(『대전회통』 권1, 吏典 內命婦 宮人職); 守閨以下係宮人職·守則從六品。掌饌·掌正從七品。掌書·掌縫從八品。掌藏·掌食·掌醫從九品(『대전회통』 권1, 吏典 內命婦 世子宮 宮人職).

56) 尙宮以下係宮人職。尙儀正五品。尙服·尙食從五品。尙寢·尙功正六品。尙正·尙記從六品。典賓·典衣·典膳正七品。典設·典製·典言從七品。典贊·典飾·典藥正八品。典燈·典彩·典正從八品。奏宮·奏商·奏角正九品。奏變徵·奏徵·奏羽·奏變宮從九品。(『육전조례』 권1, 吏典 吏曹 考勳司 命婦爵帖); 守閨以下係宮人職。守則從六品。掌饌·掌正從七品。掌書·掌縫從八品。掌藏·掌食·掌醫從九品。(『육전조례』 권1, 吏典 吏曹 考勳司 命婦爵帖).

정2품 (正二品)		현부인(縣夫人)	정부인 (貞夫人)
종2품 (從二品)		현부인(縣夫人)	정부인 (貞夫人)
정3품 (正三品)	당상관 (堂上官)	신부인(愼夫人)	숙부인 (淑夫人)
		신인(愼人)	숙인 (淑人)
종3품 (從三品)		신인(愼人)	숙인 (淑人)
정4품 (正四品)		혜인(惠人)	영인 (令人)
종4품 (從四品)		혜인(惠人)	영인 (令人)
정5품 (正五品)		온인(溫人)	공인 (恭人)
종5품 (從五品)		온인(溫人)	공인 (恭人)
정6품 (正六品)			의인 (宜人)
종6품 (從六品)			의인 (宜人)
정7품 (正七品)			안인 (安人)
종7품 (從七品)			안인 (安人)
정8품 (正八品)			단인 (端人)
종8품 (從八品)			단인 (端人)
정9품 (正九品)			유인 (孺人)
종9품 (從九品)			유인 (孺人)

*참조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외명부에 소속된 여성들 중 종친 처(宗親妻)와 문무관 처(文武官妻)의 품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외명부(外命婦) 봉작종부직(封爵從夫職)⁵⁷⁾에 따르면 종친 처에서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는 부부인(府夫人)(대군 처[大君妻])과 군부인(郡夫人)(왕자군 처[王子君妻])이 유일하다.

종친 처 종1품 군부인(郡夫人)과 봉보부인은 같은 품계이며 정2품 현부인(縣夫人), 종2품 현부인(縣夫人), 정3품 당상관(堂上官) 신부인(愼夫人), 신인(愼人), 종3품 신인(愼人), 정4품 혜인(惠人), 종4품 혜인(惠人), 종5품 온인(溫人), 종5품 온인(溫人), 정6품 순인(順人)은 봉보부인보다 아래 품계에 해당된다.

문무관 처에서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이 봉보부인보다 높은 정1품의 품계에 해당하고, 종1품 정경부인이 봉보부인과 같은 품계이다. 정2품 정부인(貞夫人), 종2품 정부인(貞夫人), 정3품 당상관(堂上官) 숙부인(淑夫人), 숙인(淑人), 종3품 숙인(淑人), 정4품 영인(令人), 종4품 영인(令人), 정5품 공인(恭人), 종5품 공인(恭人), 정6품 의인(宜人), 종6품 의인(宜人), 정7품 안인(安人), 종7품 안인(安人), 정8품 단인(端人), 종8품 단인(端人), 정9품 유인(孺人), 종9품 유인(孺人)은 모두 봉보부인보다 낮은 품계였다. 『대전통편』⁵⁸⁾과 『대전회통』⁵⁹⁾의 기록에서도 위와 같이 정1품 종친 처 부부인

57) 宗親妻 正一品 府夫人大君妻。 郡夫人。 從一品 郡夫人。 正二品 縣夫人。 從二品 縣夫人。 正三品 堂上官 愼夫人。 愼人。 從三品 愼人。 正四品 惠人。 從四品 惠人。 正五品 溫人。 從五品 溫人。 正六品 順人。(『경국대전』 권1, 吏典 外命婦 封爵從夫職); 文武官妻 正一品 貞敬夫人。 從一品 貞敬夫人。 正二品 貞夫人。 從二品 貞夫人。 正三品 堂上官 淑夫人。 淑人。 從三品 淑人。 正四品 令人。 從四品 令人。 正五品 恭人。 從五品 恭人。 正六品 宜人。 從六品 宜人。 正七品 安人。 從七品 安人。 正八品 端人。 從八品 端人。 從九品 孺人。 從九品 孺人。(『경국대전』 권1, 吏典 外命婦 封爵從夫職)

58) 府夫人正一品。 大君妻。 郡夫人正一品。 王子君妻。 郡夫人從一品。 縣夫人正·從二品。 愼夫人正三品堂上官。 愼人正·從三品。 惠人正·從四品。 溫人

과 군부인, 문무관 처 정경부인을 제외하고는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가 없었다.

정리하자면 종친 처 중에서는 부부인과 군부인, 문무관 처 중에서는 정경부인이 정1품으로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이고, 종친 처 군부인과 문무관 처 정경부인은 종1품으로 봉보부인과 같은 품계이다.

보통 외명부는 남편의 품계(직급)에 따라 본인의 품계도 결정되는데, 봉보부인의 경우 왕의 유모라는 이유로 남편의 품계와 상관없이 종1품의 높은 품계에 올랐다. 왕의 서자인 군(君)의 부인과 의정부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의 부인과 같은 품계였다는 것은 신분이 천민인 봉보부인에게 매우 높은 대우를 해준 것이다. 조선시대 신분 체제상 면천을 시켜주는 것은 체제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면천 대신 높은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봉보부인은 왕비의 어머니인 부부인과 왕녀인 공주, 옹주보다는 품계가 낮았지만, 왕세자의 딸인 군주와 현주보다는 품계가 높았다. 이는 봉보부인을 왕세자의 딸인 군주와 현주보다 낮은 품계에 두는 것이 ‘효(孝)’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종실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에 유모의 공을 중요하게 여겨 옛 제도를 상고하여 법을 세

正·從五品。 順人正六品。(『대전통편』 권1, 吏典 外命婦 宗親妻);貞敬夫人正·從一品。 貞夫人正·從二品。 淑夫人正三品堂上官。 淑人正從三品。 令人正·從四品。 恭人正·從五品。 宜人正·從六品。 安人正·從七品。 端人正·從八品。 孺人正·從九品。(『대전통편』 권1, 吏典 外命婦 宗親妻).

59) 府夫人正一品。 大君妻。 郡夫人正一品。 王子君妻。 ○ 郡夫人, 從一品。 縣夫人, 正·從二品。 愼夫人, 正三品堂上官。 愼人, 正·從三品。 惠人, 正·從四品。 溫人, 正·從五品。 順人, 正六品。 補 已上, 依文武官命婦例, 封爵。(『대전회통』 권1, 吏典 外命婦 宗親妻);貞敬夫人正·從一品。 貞夫人正·從二品。 淑夫人正三品堂上官。 淑人正從三品。 令人正·從四品。 恭人正·從五品。 宜人正·從六品。 安人正·從七品。 端人正·從八品。 孺人正·從九品。(『대전회통』 권1, 吏典 外命婦 文武官妻).

우라고 명하는 부분에서 자신을 키워준 유모의 공을 대우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신을 키워준 유모에 대한 ‘효’가 드러난다.

하지만 조선시대 신분 체제상 면천시켜주는 것은 많은 반대가 따르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분질서를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의 대우를 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자 본래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갑작스럽게 세자가 되었고,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기간도 단 두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깨고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누구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왕이라는 존재는 양반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런 초월적인 존재인 왕을 양육했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유모에게 종2품이라는 높은 품계를 내림으로서 왕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세종이 왕의 유모에게 종2품이라는 높은 품계와 ‘봉보부인’이라는 봉작을 내린 것은 왕 본인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 때 종2품이었던 봉보부인의 품계가 성종 때 종1품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품계가 종1품으로 상승한 것 또한 앞과 같은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연산군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산군일기』에서는 봉보부인에 대한 대우가 너무 과함을 지적하는 신하들과 연산군의 대립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연산군은 자신을 키워준 유모에 대한 공을 강조하며 대우와 도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효’가 드러난다. 하지만 봉보부인의 대우가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는 신하들에게 아무리 반복하여 말할지라도 결코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겉으로는 봉보부인을 ‘효’의 논리로 대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속으로는 봉보부인을 통해 ‘왕권’을 드러내고자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봉보부인은 왕의 수많은 노비 중 하나인데, 그 노비 중 최고는 봉보부인이었던 것이다. 즉, 주인(왕)이 조선에서 가장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봉보부인에게도 높은 품계를 주었던 것이고, 봉보부인을 통해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통해 왕의 권력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왕과 왕세자의 후궁과 봉보부인의 품계를 비교해보았다. 왕의 후궁인 ‘빈’을 제외하고는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가 없었고, ‘귀인’과는 같은 품계였다. 왕과 왕세자 후궁의 신분이 봉보부인보다 대부분 높았던 것을 보았을 때, 천민인 봉보부인을 중1품 귀인과 같은 품계에 두었다는 것은 조선시대 신분 체제상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대우는 봉보부인이 왕의 유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왕실 유모들과 봉보부인의 품계를 비교해보았다. 왕실 유모들은 봉보부인과 같이 천민의 신분이었고, 왕실 가족들을 양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처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키운 아이가 왕이 되면서부터 품계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 왕실 유모들의 품계는 중궁의 유모가 궁내 5품직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부분 중궁의 유모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봉보부인과는 최소 7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같은 왕실 유모였지만, 자신이 키운 아이의 지위에 따라 대우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궁의 유모를 제외한 왕실 유모들의 품계는 다음 장에 서술할 진배(進排) 물종의 수량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궁인들과 봉보부인의 품계를 비교해보았다. 궁인 중에서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의 궁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궁인직에서 가장 높은 품계는 정5품 상궁과 상의로 봉보부인과 7품의 차이가 났고, 세자궁 궁인직에서 가장 높은 품계인 중6품 수규와 수칙과는 9품의 차이를 보였다. 봉보부

인은 왕의 유모가 되면서 일반 궁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품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친 처, 문무관 처와 봉보부인의 품계를 비교해보았다. 봉보부인보다 높은 정1품의 품계에는 종친 처 부부인과 군부인, 문무관 처 정경부인이 있었고, 봉보부인과 같은 중1품의 품계에는 종친 처 군부인과 문무관 처 정경부인이 있었다.

외명부는 남편의 품계(직급)에 따라 본인의 품계도 결정되었는데, 봉보부인은 남편의 품계와는 상관없이 왕의 유모라는 이유로 인해 중1품의 높은 품계에 올랐다.

왕의 서자인 군의 부인과 의정부 좌찬성, 우찬성의 부인과 같은 품계였다는 것은 천민인 봉보부인에게 매우 높은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신분 체제상 면천을 시켜주는 것은 왕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천 대신 높은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왕실의 관청에서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 왕실 유모들에게 지급한 물종(物種)을 통해 봉보부인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V. 봉보부인의 대우(待遇)

의식주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인 입을 것(옷), 먹을 것(음식), 생활하는 곳(집)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왕실의 각 관청에서는 의식주에 꼭 필요한 물종(物種)들을 지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는데 이번 장에서는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 왕실 유모들이 지급받은 물종과 수량을 『봉보부인등록(奉保夫人謄錄)』과 『탁지정례(度支定例)』를 통해 비교해보고, 봉보부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의 대우

왕실 유모들은 자신이 키운 아이의 품계에 따라 받는 대우에도 차이가 있었다. 왕실 유모 중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사람은 단연 왕의 유모인 ‘봉보부인’이었다. 왕의 유모는 다른 유모들과 다르게 ‘부인(夫人)’이라는 칭호를 받아 ‘봉보부인’으로 불리었고, 천민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종1품의 높은 품계를 받았다. 이는 『봉보부인등록』과 『탁지정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기일(期日)을 맞아 여러 관청에서 지급했던 물종(物種)과 수량을 『봉보부인등록』과 『탁지정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왕실 유모들이 받는 물종과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본 다음, 왕의 유모인 봉보부인과 나머지 왕실 유모들이 받는 물종과 수량을 비교하여 이들의

대우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5.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의 물종 비교>

기 일 期 日	관청 (官廳)	물종 (物種)	봉보부인 (奉保夫人)	왕실 유모(乳母), 자전 아지(慈殿阿只), 중궁(中宮), 세자(世子), 세자빈(世子嬪), 세손(世孫), 세손빈(世孫嬪), 원자(元子), 원자빈(元子嬪) 유모(乳母)
축 일 逐 日	사도시 (司導寺)	포태 (泡太)	4승5홉	2승6홉
		개자 (芥子)	9석	6석
		감장 (甘醬)	1승5홉	9홉
		우모 즈개자 (牛毛 汁芥子)	3석	
		우모 즈간장 (牛毛 汁良醬)	1홉5석	
	의영고 (義盈庫)	등법유 (燈法油)		7석
		황각 (黃角)	6량7전5분	2량
		황각 즈진유 (黃角 汁眞油)	1석5리	
	사재감 (司宰監)	석수어 (石首魚)	3개	2개

		회중전복 (灰中全鰓)	6관	4관반
		석어난해 (石魚卵醢)	1홉5석	
		염 (塩)	9홉	6홉
	내섬시 (內贍寺)	즙진유 (汁眞油)	1홉	4석
		등진유 (燈眞油)	1홉	
		초 (醋)	1홉5석	4석
		우모(牛毛)	2량6전	
		우모 초 (牛毛 醋)	4석	
		분과 (粉藿)	1량3전	1량
	국기일 國忌日	의영고 (義盈庫)	감태 (甘苔)	5전
곤 (昆)			1량5분	
해의 (海衣)			2장	1장
내섬시 (內贍寺)		표고 (蓂古)	8전	
	목맥말 (木麥末)	2홉		
축삭 逐朔	장흥고 (長興庫)	유지 (油紙)	2장	
	제용감 (濟用監)	구을개차8승백저포 (拘乙介次8升白苧布)	7척	

		구을개차백정포 (拘乙介次白正布)	9척	
		구을개차생정포 (拘乙介次生正布)	4척	
		포장소용8승백저 3폭복 (泡匠所用8升白苧 3幅袱)	2건	
		포장소용8승백저 2폭복 (泡匠所用8升白苧 2幅袱)	2건	
		포장소용백정 8척대 (泡匠所用白正 8尺岱)	1건	
춘 등 春 等	제용감 (濟用監)	정포 (正布)	6필	2필
		백저포 (白苧布)	1필	반필
		관목 (官木)	1필	
추 등 秋 等	제용감 (濟用監)	구승백목 (九升白木)	1필	
		오승목 (五升木)	1필	
		정포 (正布)	4필	2필
		중면자 (中綿子)	1근	
연 례 年 例	호조 (戶曹)	산삼고경 (山蔘苦蕒)	5석	
침 장 소 입	장흥고 (長興庫)	유기 (柳箕)	1개	
		유오 (柳箕)	2부	

沉醬所入		유지 (油紙)	5장	
침저소입 沉菹所入	장흥고 (長興庫)	유지 (油紙)	5장	

*참조 : 『탁지정례(度支定例)』, 박미선, 앞의 논문, 71~72쪽.

먼저 봉보부인을 제외한 왕실 유모들이 지급 받았던 물종과 수량을 알아보자. 여기서 비교해볼 왕실 유모들은 대비전 유모인 자전 아지(慈殿 阿只)와 중궁(中宮), 세자(世子), 세자빈(世子嬪), 세손(世孫), 세손빈(世孫嬪), 원자(元子)와 원자빈(元子嬪), 원손(元孫)과 원손빈(元孫嬪) 유모(乳母)이다. 축일(逐日)에 받았던 물종 중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축일에는 사도시(司禦寺)에서 포태(泡太), 개자(芥子), 감장(甘醬)을 지급하였다. 포태는 각 2승 6홉, 개자는 각 6석, 감장은 각 9홉을 동일하게 지급받았다. 의영고(義盈庫)에서는 등법유(燈法油)와 황각(黃角)을 지급받았는데, 등법유는 각 7석, 황각은 각 2량을 동일하게 지급받았다. 사재감(司宰監)에서는 석수어(石首魚), 회중전복(灰中全鰓), 염(鹽)을 지급받았는데, 석수어 각 2개, 회중전복 각 4관 반, 염 각 6홉을 동일하게 지급받았다. 내섬시(內贍寺)에서는 즈진유(汁眞油)를 지급받았는데, 즈진유 역시 각 4석씩 동일하게 지급받았다. 국기일(國忌日)에 지급 받았던 물종 중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국기일에는 의영고(義盈庫)에서 분곽(粉藿), 해의(海衣)를 지급하였는데, 분곽은 각 1량, 해

의는 각 1장씩을 동일하게 지급받았다. 춘등(春等)에는 봄을 맞아 주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물종을 지급하였다. 춘등에 지급 받았던 물종 중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제용감(濟用監)에서 정포(正布)와 백저포(白苧布)를 지급하였는데, 정포는 각 2필, 백저포는 각 반 필씩 동일하게 지급받았다. 추등(秋等)에도 가을을 맞아 주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물종을 지급하였는데, 제용감(濟用監)에서 정포(正布)를 각 2필씩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자전 아지와 중궁,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원자와 원자빈, 원손과 원손빈의 유모들이 받은 물종과 수량을 살펴보면 이들이 동일한 물종과 수량을 지급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왕실 유모들이 받은 대우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왕실 유모들의 품계는 중궁 유모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중궁의 유모가 5품인 것으로 볼 때 중궁의 유모와 같은 물종과 수량을 받았다는 점에서 왕실 유모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품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앞에서 왕실 유모들이 지급 받았던 물종과 수량을 봉보부인이 받은 수량과 비교해보고, 봉보부인에게만 특별하게 지급된 물종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대우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왕실 유모들이 지급 받았던 물종과 수량을 봉보부인이 받은 수량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축일(逐日)에 받았던 물종 중에서 몇 가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축일에는 사도시(司隲寺)에서 포태(泡太), 개자(芥子), 감장(甘醬)을 왕실 유모들에게 지급했는데, 가장 많은 양을 지급 받은 유모는 단연 봉보부인이었다. 포태의 경우 봉보부인이 4승 5흡을 지급받았고, 왕실 유모는 각 2승 6흡을 지급받았다. 개자도 봉보부인은 9석을 지급받았으나, 왕실 유모는 각 6석을 지급받았다. 의영고(義盈庫)에서 지급한 황각(黃角)은 봉보부인이 6량 7전 5분을, 왕실 유모는 각 2량을 지급받았다. 봉보부인이 지급받은 수량과 왕실 유모들이 지급받은 수량을 비교해보면 봉보부인이

3배 이상 월등하게 많이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재감(司宰監)에서는 석수어(石首魚), 회중전복(灰中全鰓), 염(鹽)을 지급받았는데, 석수어는 봉보부인이 3개, 왕실 유모는 각 2개를 지급받았다. 회중전복은 봉보부인이 6관, 왕실 유모는 각 4관 반을 지급받았고, 염은 봉보부인 9홉, 왕실 유모는 각 6홉을 지급받았다. 내접시(內贍寺)에서는 즈진유(汁眞油)를 지급받았는데, 즈진유는 봉보부인이 1홉, 왕실 유모가 각 4석을 지급받았다. 단위를 환산하자면 1홉(合)은 60cc이고, 1석(夕)은 6cc인데 이를 통해 왕실 유모보다 봉보부인이 2.5배 넘는 양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기일(國忌日)에 지급 받았던 물종 중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국기일에는 의영고(義盈庫)에서 분곽(粉藿), 해의(海衣)를 지급하였는데, 봉보부인은 분곽을 1량 3전 지급받았고, 왕실 유모는 각 1량을 지급받았다. 해의는 봉보부인이 2장을 지급받았고, 왕실 유모는 각 1장을 지급받았다.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들이 지급받은 수량을 비교하면 봉보부인이 2배 더 많은 양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춘등(春等)에 지급 받았던 물종 중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춘등에는 제용감(濟用監)에서 정포(正布)와 백저포(白苧布)를 지급하였는데, 정포는 봉보부인에게 6필이 지급되었고, 왕실 유모에게는 각 2필이 지급되었다. 봉보부인이 무려 3배나 많은 양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저포는 봉보부인 1필, 왕실 유모가 반 필을 지급받았다. 봉보부인이 2배 많은 양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등(秋等)에도 물종을 지급하였는데, 추등에는 제용감(濟用監)에서 정포(正布)를 봉보부인에게 4필 지급하였고, 왕실 유모에게 각 2필 지급하였다. 정포 또한 봉보부인에게 2배 많은 양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는 천민이라는 신분과 왕실 유모로서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른 아이가 왕이 되면서 더 이상 같은 왕실 유모라고 보기 힘들만큼 높은 품계와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왕실 유모들 중 봉보부인에게만 특별하게 지급된 물종을 살펴보고자 한다. 축일에는 사도시에서 봉보부인에게 우모 개자(牛毛 芥子) 3석, 우모 즙간장(牛毛 汁良醬) 1합 5석을 지급하였다. 의영고에서는 봉보부인에게 황각 즙진유(黃角 汁眞油)를 1석 5리 지급하였고, 사재감에서는 석어난해(石魚卵醢) 1홉 5석을 지급하였다. 내섬시에서는 봉보부인에게 등진유(燈眞油) 1홉, 우모(牛毛) 2량 6전, 우모 초(牛毛 醋)를 4석 지급하였다. 여기서 봉보부인이 받은 ‘등진유’는 앞에서 왕실 유모에게 지급된 ‘등범유’와 용도가 같았는데, 둘 다 촛불에 쓰이는 기름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등진유’는 참기름이었고 ‘등범유’는 들기름이었는데, 당시 참기름은 들기름에 비해 비싼 기름이었다.⁶⁰⁾ 왕실 유모에게는 참기름보다 저렴한 들기름을 지급하고, 봉보부인에게는 값비싼 참기름을 지급한 것을 보아 왕의 유모인 봉보부인에게 질 좋은 물종을 지급함으로써 더 좋은 대우를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기일에는 의영고에서 감태(甘苔) 5전과 곤(昆) 1량 5분을 봉보부인에게 지급하였고, 내섬시에서는 봉보부인에게 표고(蓼古) 8전과 목맥말(木麥末) 2홉을 지급하였다. 장흥고에서는 봉보부인에게 유지(油紙)를 2장 지급하였고, 제용감에서는 봉보부인에게 구을개차8승백저포(拘乙介次8升白苧布) 7척, 구을개차백정포(拘乙介次白正布) 9척, 구을개차생정포(拘乙介次生正布) 4척, 포장소용8승백저 3폭복(泡匠所用8升白苧 3幅袱) 2건, 포장소용8승백저 2폭복(泡匠所用8升白苧 2幅袱) 2건, 포장소용백정 8척대(泡匠所用白正 8尺袋) 1건을 지급하였다. 춘등에는 제용감에서 봉보부인에게 관목(官木) 1필을 지급하였고, 추등에도 제용감에서 봉보부인에게 구승백목(九升白木) 1필과 오승목(五升木) 1필, 중면자(中綿子) 1근을 지급하였다. 연례에는 호조에서 봉보부인에게 산삼고경을 5석 지급하였다. 침장소입에는 장흥고에서 봉보부인에게 유기(柳箕) 1개, 유오(柳箕) 2부, 유지(油紙) 5

60) 김옥선, 2017, 「조선시대 유지 제작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8쪽.

장을 지급하였고, 침저소입에는 장흥고에서 봉보부인에게 유지 5장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봉보부인은 왕실 유모에 비해 더 다양한 물종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왕이 자신을 키워준 유모에 대해 극진한 대우를 해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왕실 유모에 비해 봉보부인에게 더 다양한 물종과 많은 수량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봉보부인과 왕·왕세자 후궁의 대우

봉보부인은 종1품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품계의 왕실 여성은 왕의 후궁(後宮)과 왕세자의 후궁이었는데, 왕의 후궁은 정1품부터 종4품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고 왕세자의 후궁은 종2품부터 종5품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 품계만 비교했을 때 왕의 후궁 중 정1품 빈(嬪)을 제외하고는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가 없었다. 이로 보아 봉보부인은 왕의 후궁이나 왕세자의 후궁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았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봉보부인과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선 연구 방법과 같이 『봉보부인등록』과 『탁지정례』를 통해 각 기일(期日)을 맞아 각 관청에서 봉보부인과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에게 지급했던 물종의 종류와 수량을 살펴보고 이들의 대우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6. 봉보부인과 왕·왕세자의 후궁 물종 비교-1>

기일 (期日)	관청 (官廳)	물종 (物種)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
축일 (逐日)	사도시 (司隲寺)	포태 (泡太)	4승5홉	4승5홉	4승5홉
		개자 (芥子)	9석	9석	9석
		감장 (甘醬)	1승5홉	1승5홉	1승5홉
	사재감 (司宰監)	석수어 (石首魚)	3개	3개	3개
		염(塩)	9홉	9홉	9홉
	내섬시 (內贍寺)	즙진유 (汁眞油)	3홉	3홉	1홉
		등진유(燈眞油)	2홉	2홉	1홉
		초 (醋)	1홉5석	1홉5석	1홉5석
		우모 (牛毛)	2량6전	2량6전	2량6전
		우모 초 (牛毛 醋)	4석	4석	4석
춘등 (春等)	제용감 (濟用監)	백저포 (白苧布)	1필	1필	1필

*참조 : 『탁지정례(度支定例)』, 박미선, 앞의 논문, 73쪽.

<표 7. 봉보부인과 왕·왕세자의 후궁 물종 비교-2>

기일 (期日)	관청 (官廳)	물종 (物種)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
축일 (逐日)	의영고 (義盈庫)	황각 (黃角)	13량5전	13량5전	6량7전5분
		황각 즙진유 (黃角 汁眞油)	3석	3석	1석5리
	사재감 (司宰監)	회중전복 (灰中全鰓)	1첩貼	1첩	6관串
		석어난해 (石魚卵醢)	3홉	1홉5석	1홉5석
	내섬시 (內贍寺)	즙진유 (汁眞油)	3홉	3홉	1홉
		등진유 (燈眞油)	2홉	2홉	1홉
	사도시 (司隴寺)	우모 즙개자 (牛毛 汁芥子)	9석	9석	3석
춘등 (春等)	제용감 (濟用監)	정주 (鼎紬)	2필	1필	
		정포 (正布)	12필	8필	6필
추등 (秋等)	제용감 (濟用監)	정포 (正布)	12필	8필	4필
		백저포 (白苧布)	1필		
		중면자 (中綿子)	2근	1근	1근

*참조 : 『탁지정례(度支定例)』, 박미선, 앞의 논문, 73쪽.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이 축일과 춘등에 받았던 물종(物種) 중 몇 가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축일에는 사도시에서 포태, 개자, 감장

을 지급했는데, 포태는 왕의 후궁에게 4승 5홉을 지급했고, 왕세자의 후궁에게도 4승 5홉, 봉보부인에게도 4승 5홉을 지급하였다. 개자도 왕의 후궁에게 9석을 지급했고, 왕세자의 후궁에게 9석, 봉보부인에게 9석을 지급하였다. 감장은 왕의 후궁에게 1승 5홉, 왕세자의 후궁에게 1승 5홉, 봉보부인에게 1승 5홉을 지급하였다. 사재감에서는 석수어, 염을 지급하였는데, 석수어는 왕의 후궁에게 3개, 왕세자의 후궁에게 3개, 봉보부인에게 3개를 지급하였고, 염 또한 왕의 후궁에게 9홉, 왕세자의 후궁에게 9홉, 봉보부인에게 9홉을 지급하였다. 내섬시에서는 초, 우모, 우모 초를 지급하였는데, 초는 왕의 후궁에게 1홉 5석, 왕세자의 후궁에게 1홉 5석, 봉보부인에게 1홉 5석을 지급하였다. 우모는 왕의 후궁에게 2량 6전, 왕세자의 후궁에게 2량 6전, 봉보부인에게 2량 6전을 지급하였다. 춘등에는 제용감에서 백저포를 지급하였는데, 왕의 후궁에게 1필을 지급하였고, 왕세자의 후궁에게 1필, 봉보부인에게 1필을 지급하였다. 축일과 춘등에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에게 지급한 물종과 수량을 확인해보면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에게 모두 같은 물종과 같은 양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보부인의 품계는 종1품으로 후궁들과 견주어도 높은 품계였으나, 같은 물종과 같은 양을 지급받았던 것은 신분의 차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후궁들이 양반인 것과 달리 봉보부인의 신분은 천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궁들과 같은 물종과 양을 지급함으로써 좋은 대우를 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이 각 관청에서 지급받았던 물종의 수량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이 각 관청에서 지급받았던 물종과 수량을 몇 가지 더 확인해보겠다. 축일에는 의영고에서 황각과 황각 죽진유를 지급받았는데, 황각은 왕의 후궁에게 13량 5전을 지급하였고, 왕세자의 후궁에게도 13량 5전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봉보부인에게는 절반에 불

과한 6량 7전 5분이 지급되었다. 황각 즈진유는 왕의 후궁에게 3석이 지급되었고, 왕세자의 후궁에게도 3석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봉보부인에게는 1석 5리가 지급되었다. 사재감에서는 회중전복과 석어난해를 지급하였다. 회중전복은 왕의 후궁에게 1첩이 지급되었고, 왕세자의 후궁에게도 1첩이 지급되었으나 봉보부인에게는 6관만 지급되었다. 내섬시에서는 즈진유와 등진유를 지급하였는데, 즈진유는 왕의 후궁에게 3홉이 지급되었고, 왕세자의 후궁에게도 3홉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봉보부인에게는 1홉만 지급되었다. 등진유는 왕의 후궁에게 2홉이 지급되었고, 왕세자의 후궁에게도 2홉이 지급되었으나, 봉보부인에게는 1홉만 지급되었다. 사도시에서는 우모 즈개자를 지급하였는데, 왕의 후궁에게 9석, 왕세자의 후궁에게도 9석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봉보부인에게는 3석만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보다 봉보부인이 약 2배에서 3배정도 더 적은 양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춘등에 제용감에서 받은 정포와 정주의 양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정포는 왕의 후궁에게 12필이 지급되었고, 왕세자의 후궁에게는 8필이 지급되었으며 봉보부인에게는 6필이 지급되었다. 정주는 왕의 후궁에게 2필이 지급되었고, 왕세자의 후궁에게는 1필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봉보부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추등에는 제용감에서 정포, 중면자, 백저포를 지급하였다. 정포는 왕의 후궁에게 12필, 왕세자의 후궁에게 8필, 봉보부인에게 4필을 지급하였다. 중면자는 왕의 후궁에게 2근을 지급하였고, 왕세자의 후궁에게 1근, 봉보부인에게도 1근을 지급하였다. 백저포는 왕의 후궁에게만 1필이 지급되었고, 왕세자의 후궁과 봉보부인은 지급받지 못했다. 이를 통해 봉보부인은 같은 물종이라도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보다 더 적은 양을 지급받았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한 물종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봉보부인은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에 준하는 좋은 대우를 받았으나 천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종1

품이라는 품계와 달리 차등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봉보부인은 왕실 유모의 한 사람으로 신분은 천민이었으나, 자신이 키운 아이가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 종1품의 품계와 함께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일마다 여러 관청에서 지급한 물종과 수량을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과 비교해보았다. 먼저 왕실 유모(자전 아지, 중궁,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원자, 원자빈, 원손, 원손빈 유모)들이 받은 물종과 수량 확인을 통해 이들의 대우가 같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 유모들의 품계가 5품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했던 왕실 유모에게 지급된 물종의 수량을 봉보부인이 받은 수량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봉보부인이 왕실 유모에 비해 훨씬 많은 수량의 물종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봉보부인에게만 특별하게 지급된 물종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봉보부인이 왕실 유모보다 다양한 물종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보부인과 왕실 유모는 천민이라는 신분과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기른 아이가 왕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같은 왕실 유모라 보기 힘들만큼 높은 품계와 좋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왕이 자신을 키워준 유모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다양한 물종과 많은 수량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에게 지급한 물종과 수량을 비교해보았다. 봉보부인과 비슷한 품계의 왕실 여성은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이었는데, 왕 후궁의 품계는 정1품부터 종4품이었고 왕세자 후궁의 품계는 종2품부터 종5품이었다. 품계만 비교했을 때 왕의 후궁 중 정1품 빈을 제외하고는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가 없었기 때문에, 봉보부인은 왕의 후궁이나 왕세자의 후궁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의 방법과 같이 각 기일마다 여러 관청에서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에게 지급한 물종과 수량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에게 같은 물종과 같은 양을 지급한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봉보부인의 품계는 종1품으로 후궁들과 견주어도 높은 품계였으나, 같은 물종과 같은 양을 지급받았던 것은 신분의 차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후궁들이 양반인 것과 달리 봉보부인의 신분은 천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궁들과 같은 물종과 양을 지급함으로써 좋은 대우를 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 봉보부인이 각 관청에서 지급받았던 물종의 수량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보다 봉보부인이 적게 받는 물종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봉보부인은 같은 물종이라도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보다 더 적은 양을 지급받았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한 물종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봉보부인은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에 준하는 좋은 대우를 받았으나, 천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종1품이라는 품계와 달리 차등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봉보부인의 품계는 종1품으로 왕의 후궁과 왕세자의 후궁에 준하는 매우 높은 품계였다. 조선시대 품계 체제에서 두 번째로 높은 품계였으며 다른 왕실 유모들이 5품 정도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품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종1품이라는 높은 품계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봉보부인의 신분과 생활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봉보부인의 주요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유(授乳)와 치유(治癒)였는데,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왕실 유모의 주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좋은 유모를 선발하는 기준과 왕실 유모의 출신성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통 유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유(授乳)’라고만 생각하는데, 수유가 단순히 ‘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모의 역할에 맞춰 유모를 선발하는 조건과 출신성분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III장에서는 봉보부인의 품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종 사료(史料)를 통해 봉보부인의 품계를 알아보고, 봉보부인과 내명부(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 왕실 유모, 궁인), 외명부(종친 및 문무관 처) 여성들의 품계를 비교하여 봉보부인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IV장에서는 왕실의 각 관청에서 지급한 의식주 물종을 통해 봉보부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살펴보았다. 사료를 통해 봉보부인과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 왕실 유모들이 지급받은 물종과 수량을 비교해보고, 봉보부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아보았다.

이상으로 봉보부인의 지위와 대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는 신분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도 불구하고 천민 신분인 봉보부인이 종1품의 높은 품계였던 것은 왕의 유모이기 때문이었다. 봉보부인은 왕을 키워준 사람으로 왕에게는 제2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왕은 이런 봉보부인의 공을 내세워 종1품이라는 높은 품계를 내렸다. 겉으로는 ‘효’로써 봉보부인을 대우했던 것으로 보이나, 속으로는 이를 통해 ‘왕’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하면 봉보부인은 왕의 노비 중 하나였는데, 종1품이라는 높은 품계와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은 주인인 왕의 신분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이 양반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도 생각된다.

또한 왕을 키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1품인 것은 왕의 존재가 매우 높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다.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천민인 봉보부인에게 종1품의 품계를 내린 것이 지나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은 이것을 ‘효’라는 논리로 정당화하여 양반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봉보부인은 종1품의 품계에도 불구하고 종1품의 대우를 완전히 누리진 못했다.

IV장에서 봉보부인과 왕의 후궁, 왕세자의 후궁이 지급받는 물종과 수량을 비교했을 때 봉보부인은 후궁들에 비해 거의 같거나 부족하게 지급받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왕의 후궁인 ‘빈’과 ‘귀인’을 제외하고는 봉보부인보다 높은 품계가 없었지만 같거나 부족하게 지급받았던 것은 신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후궁의 신분은 대부분 양반이었는데, 천민인 봉보부인에게 후궁보다 높은 대우를 해주면 신분제 자체가 깨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봉보부인이 왕을 키웠다는 공로를 인정하여 높은 품계와 좋은 대우를 해줬지만, 신분 체제를 무시하면서까지 봉보부인을 대우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봉보부인이 양반이었다면 품계에 맞춰 대우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봉보부인의 신분은 천민이었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조선 신분

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천민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왕의 유모라는 특권을 어떻게 줄지 고민했을 것인데, 그 결과가 IV장의 물종과 수량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왕권과 신분제를 중화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봉보부인을 대우하는 것에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보부인은 왕의 유모이기 때문에 봉보부인을 통해 ‘왕권’을 드러내야 했다. 그럼에도 봉보부인의 신분이 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 양반들은 면천시켜주는 것이 신분제를 와해시키고 양반사회를 파괴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봉보부인의 면천을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분제하에서 품계를 올려준다면 큰 반발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양반체제가 안전한 선에서 봉보부인을 대우해줬던 것으로 보인다.

봉보부인을 통해 조선은 계급(階級)보다 신분이 우선시되는 사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왕권과 조선의 신분제가 봉보부인과 결합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조선의 국가체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봉보부인의 지위와 대우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살폈는데, 사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비교를 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봉보부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더욱 다양한 견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사료

『經國大典』

『大戴禮』

『大典通編』

『大典會通』

『東醫寶鑑』

『萬機要覽』

『奉保夫人膳錄』

『承政院日記』

『六典條例』

『臨産豫知法』

『朝鮮王朝實錄』

『朱子家禮』

『春秋日記』

『度支定例』

『閑中錄』

2. 단행본

김문식, 김정호, 2003,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박양숙 편, 1996, 『대대례(大戴禮)』, 자유문고.

- 박영규, 2004,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웅진지식하우스.
- 신명호, 2004, 『궁녀 : 궁궐의 꽃』, 시공사.
- _____, 2005, 『조선왕실의 자녀교육법』, 시공사.
- _____, 2016, 『조선왕실의 책봉의례』, 세창출판사.
- 이성주, 2009, 『발칙한 조선인물실록』, 추수밭.
- 유승환, 2010, 『한권으로 읽는 조선 왕비 열전』, 글로북스.
- 임민혁 편, 1999, 『주자가례(朱子家禮)』, 예문서원.
- 최선경, 2007, 『왕을 낳은 후궁들』, 김영사.

3. 논문

- 김옥선, 2017, 「조선시대 유지 제작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선, 2011, 「18 19세기 왕실유모의 범위와 위상」 - <度支定例>와 <例式通考>를 중심으로 -, 『사총』 7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신명호, 2002, 「조선시대 宮中の 出産風俗과 宮中醫學」, 『古文書研究』 21, 한국고문서학회.
- 신현정, 2006, 「모유수유체험의 의미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9권 2호, 한국교육인류학회.
- 이미선, 2011, 「조선중기(연산군~현종) 後宮의 입궁과 사회적 위상」, 『한국사연구』 154, 한국사연구회.
- _____, 2015, 「조선시대 後宮(후궁)의 용어와 범주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회.
- 정승혜, 2006, 「조선 왕실의 출산 문화」, 『문헌과 해석』 37, 태학사.

- 한희숙, 2019, 「조선시대 선왕 후궁에 대한 처우와 궁가(宮家)의 변천」, 『여성과 역사』 30, 한국여성사학회.
- , 2007, 「조선 전기 奉保夫人의 역할과 지위」, 『조선시대사학보』 43, 조선시대사학회.
- 홍순민, 2004, 「[궁궐 안 사람들]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통권 68호, 역사비평사.

